

# 국제금융레짐과 국내금융체제의 상관성 연구\*



변 영 학 (대구가톨릭대)  
(yhbyuncolin@cu.ac.kr)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은행의 서베이 IV 데이터에 기반하여, 규제감독기구의 조직적 특성이 바젤원칙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레짐의 참여 혹은 그 스탠더드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베버리언적인 함의를 가진다. 일국의 은행부문을 규제감독하는 국가기구가 단일한 조직이고 규제권력이 강할수록 선진적인 바젤원칙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일조직은, 여러 개의 국가기구가 은행자본을 규제할 경우 바젤원칙 채택 및 준수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조정 비용과 거래비용,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감독 당국이 은행자본에게 외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받게 하고 다양한 내부 금융정보 공개를 강제할 권한이 많거나 감독관의 법적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바젤원칙의 준수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주제어 : 금융규제, 금융감독, 세계은행, 국제레짐, 바젤원칙

\* 이 결과물은 2012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I. 문제제기

정치경제학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1년 사이에 금융위기는 147회, 외환위기는 218회나 발생하였다(Laeven and Valencia 2012). 국제통화기금은 141개국이 1980년에서 1996년 사이에 금융위기를 경험했다고 추산한다. 즉, 금융위기는 현대자본주의의 ‘일탈’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 자본주의의 체질적인 속성이다. 이러한 항상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1974년 설립하였다. 바젤위원회는 바젤원칙(Basel Core Principles for Banking Supervision)을 설정하여 각국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전파함으로써 일종의 금융레짐을 구축하였다.

국제정치경제학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국제적 조약/규범/레짐의 준수(compliance) 여부이다. 왜 어떤 나라는 국제금융레짐의 참여에 적극적인 반면 다른 나라는 소극적인가? 왜 일부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 스탠더드의 채택에 적극 동조하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거부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이러한 스탠더드가 각국 금융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규범이라 가정하면<sup>1)</sup> 왜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금융의 규범을 무시하고 후진적이고 나쁜 체제를 유지하려 하는가?

위의 질문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향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새로운 국제규범의 준수가 가져올 비용과 편익 등 이익합리성의 계산으로 그 준수여부를 분석하는 논리이다. 즉, 과거 관행과 제도를 새로운 규범에 적응시킬 경우 현재의 자산 가치가 줄게 되는 내부 비용과, 새로운 규범에 따라 거래 및 자산 정보를 감독당국과 시장에 노출시켜야 하는 외부 비용이 새 규범 준수에 따른 편익보다 많을 경우 당연히 국제금융레짐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다(Havrylyshyn 외 2001; Boughton 외 2002; Mayer 외 2002; Ivanova 외 2003). 또한 국제금융레짐 참여에 따른 비용이 적은 패권국가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금융회사와 달리, 특히 개발도상국은 국제기준의 채택이 이윤율과 경제성장을 감소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그 기준의 준수를 거부하거나 혹은 유사준수(mock compliance)로 대응할 것이다(Simmons 2001; Walter 2008). 요약하면 국내의 이해당사자들의 비용/편익 계산과 이들 집단들의 권력 수준이 국내외 제도적

---

1)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서구 금융강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비판하는 개발도상국 정부나 학자들도 많다. 이들의 비판적 견해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Jones 외(2017), Emolova(2017), Bushika(2017)

요인과 결합하여 다양한 수준의 참여/거부를 결과한다.

둘째 구성주의자들은 물질적 이익계산보다 사상, 아이디어, 문화, 인식방식 등이 국제 기준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Ruggie 1998; Riss 외 1999). 새로운 행태 규범은 기술관료나 전문지식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전파되어 하나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를 구축한다(Hass 1992; Ikenberry 1992; Slaughter 2004). 특히 국제기구/조직은 국내 정책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자신이 믿는 새로운 규범을 지적으로 훈련시키는 핵심적 행위자이다(Finnemore 외 1998). 이런 네트워크 내 협력은 상호교류, 지식 공유, 동료집단에서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 진다(Aviram 2003).

위의 접근법들은 각각의 논리적 장점을 가지고 각국별로 상이한 국제금융레짐의 참여도를 설명하지만, 각국 금융규제감독 기구의 조직적 특성과 권력 자체가 국제레짐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미흡하거나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는 단일한 통합기구가 조직적 특성 상 효율적이라 가정한다.<sup>2)</sup> 그 근거는, 첫째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의 깊숙한 진전으로 예금, 보험, 투자, 증권 등 다양한 하위금융부문들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기업이 출현했으며 이들 기업 간의 인수 합병으로 거대한 금융그룹이 존재한다. 따라서 감독기구들이 부문별로 독립 운영될 경우 이들 포괄적 금융기업집단을 제대로 통합 감시하지 못하게 된다(De Nicolo 외 2003). 둘째 통합된 감독기구는 부문별 감독기구보다 금융규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더욱 용이하다. 부문별 금융 정보를 단일 조직이 수집하여 분석, 가공한다면 그 정보처리와 관련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감독의 대상인 금융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복수의 감독기구로부터 규제받는다면 규제정책의 불필요한 중복과 과잉규제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Briault 1999). 세째 통합된 규제감독기구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라는 잇점을 누릴 수 있다. 즉 하위금융부문별로 규제감독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된 경우 운영예산, 인력, 정보 등의 투입규모가 커져서 장기적 평균 운영비용이 줄어든다(Cihak 외 2006; 변영학 2011).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규제감독 관련 정책의 결정자 수가 많으면 비효율적일 수 밖에

---

2) 통합된 단일 규제감독기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우선 통합조직 내에서도 부문별 감독을 위한 노동분업, 업무 분장과 조직분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 간의 의사소통, 정보공유, 효과적인 정책 조정은 쉽지 않다(Goodhart 외 1998). 또한 광범위한 정책목표와 기능을 가지는 통합감독기구는 하위 부문별 상이한 정책 목표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운 내부적 딜레마 때문에 신속한 금융안정화 정책을 생산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감독조직의 규모가 비대해질 경우 발생하는 규모의 비경제성(diseconomies of scale)이다(Barth 외 2003; Chihak 외 2006; 변영학 2011).

없다. 결정과정에 들어 가는 행위자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평등한 권력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이때 정책행위자의 수가 ‘n’개로 산술적으로 증가하면 이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협조해야할 채널(혹은 결정비용)의 수는 ‘ $n(n-1)/2$ ’의 수열을 가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규제감독권력이 다수의 행위자나 기구에 분산될 경우 규제감독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금융레짐의 스탠더드인 까다롭고 정교한 바젤원칙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전환의 비용’은 막대할 것이다. 수용하더라도 그 레짐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란 어려워서 퇴출되거나 자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단일/복수의 규제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 이를 분석한 세계은행의 연구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단일한 규제감독기구를 가진 국가일 경우 0, 복수의 규제감독기구를 가진 국가일 경우 1점을 배점한 후 각국의 소득수준별, 지역별 평균점수를 계산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0.0~0.3 사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규제감독체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득별 4개 범주(고소득, 중상소득, 중하소득, 저소득 국가)에서 저소득국가를 제외하면 0.2~0.3으로 별 차이가 없다. 선진국/개도국의 양분법에 따르더라도 동일하게 0.2이다. 지역별로 볼 경우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의 경우 단일한 금융규제감독기구로 편향된 0.0~0.1이고 아메리카, 아태지역, 유럽/중앙아시아는 0.2~0.3의 분포를 보인다. 한편 [표 2]에 따르면, 단일체제 하에서도 중앙은행이 규제감독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별도의 기구가 전담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 전자, 후자 모두 동일하게 61개국 이 채택하였다. 이러한 소득별, 지역별 무정형적인 분포로 인해 학자들 간의 이론적 경험적 합의는 미흡하며 따라서 이러한 조직권력적 특성이 국제레짐의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 단일/복수 규제감독 기구의 소득/지역별 국가 분포

소득별 (국가 수)	고소득국가 (45)	중상소득 국가(32)	중하소득 국가(41)	저소득국가 (35)	선진국 (29)	개도국 (124)
평균 점수	0.2	0.3	0.2	0.0	0.2	0.2
지역별 (국가 수)	아메리카 (35)	동아시아 /태평양(18)	유럽/중앙 아시아(50)	중동/북아프 리카(14)	남아시아 (4)	남아프리카 (31)
평균점수	0.3	0.3	0.2	0.1	0.0	0.0

출처: Barth 외(2006, 363~368).

[표 2] 규제감독기구의 유형별 분포

지역	중앙은행 단독(61개국)	중앙은행 포함 복수 기구(21개국)	별도의 규제감독기구 (61개국)
아프리카	이집트, 가나, 수단, 튀니지 등 15개국	모로코, 나이지리아 2개국	콩고, 카메룬, 케냐, 세네갈 등 17개국
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6개국	미국 1개국	볼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등 14개국
아시아 /태평양	인도, 말레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5개국	중국, 대만, 태국 3개국	한국, 일본, 호주, 레바논 등 4개국
유럽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등 17개국	독일, 마케도니아, 체코 등 5개국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17개국
역외센터 <sup>3)</sup>	오만, 벨리체, 바레인, 마카오 등 7개국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등 10개국	지브랄터, 저지, 말타, 푸에르토리코 등 9개국

출처: Barth 외(2006, 90~91).

## II. 방법론: 변수의 선정과 측정

세계은행(World Bank 2012)은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산업의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베이스(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Survey)를 2012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서베이 IV'로 불리는 이 데이터는 세계은행이 이전의 서베이 I(118개 국가 대상, 1999년 발간), 서베이 II(151개 국가 대상, 2003년 발간), 서베이 III(141개 국가 대상, 2007년 발간)의 연장선에서 조사한 것이다.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을 통해 서베이 IV는 현재까지 세계적 수준에서 각국 금융부문의 실태를 조사한 가장 체계적인 데이터로 인정된다. 본 논문은 서베이 IV의 설문 결과를 원자료로 하여 가공/분석하는 교차국가별 분석(cross-national analysis)이며, 그 통계 함수는 다음과 같다.

$$GFR = \alpha + \beta I + \gamma X + u$$

우선 I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독립변수(단일조직, 임기, 규제권력)이며, X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삽입된 통제변수(중앙은행, 법원, 자기자본비율, 은행의 권력과 집중도, 정부 및 외국계자본의 소유권, 은행의 운영 성적,

3) 역외센터(offshore center)는 아루바, 영국령 버진군도, 지브랄터, 마카오, 푸에르토리코 등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들에게 영업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소규모 지역을 말한다

국제금융시장의 민감성)이다.  $\alpha$  는 상수,  $\beta$  와  $\gamma$ 는 각각 독립변수(I)와 통제변수(X)의 회귀계수이며  $u$ 는 오차항이다.

## 1. 종속변수

위의 식에서 종속변수인 GFR(Global Financial Regime)은 각국이 글로벌 금융거래의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글로벌 금융레짐 참여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화 방법은 다음 [표 3]과 같다.

문항번호 3.1의 질문은, 바젤위원회가 핵심조항으로 채택한 은행산업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을 묻는다. 여기서 바젤원칙 I(Basel I)과 부채성 비율(leverage ratio)<sup>4)</sup>, 기타 규제정책을 적용할 경우는 1점을, 바젤원칙 II(Basel II)를 적용할 경우는 2점을 배정하였다. 바젤원칙 I은 바젤위원회가 1988년에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up>5)</sup>, 부외거래 리스크(off-balance sheet risks)<sup>6)</sup>, 시장 리스크를 규제하는 기준이다. 바젤위원회가 바젤원칙 I을 수정 보완하여 2006년에 채택한 바젤원칙 II(Basel II)는 3개의 구성요소(자본적정성, 감독 방식과 자본관리, 금융기관 정보공개)로 구성된다. 바젤 II는 바젤 I 및 부채성 비율 기준보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규제감독에서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2점을 부여하였다.

[표 3] 글로벌 금융레짐 참여도의 지수화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점수 배정	
3.1	2010년 말 현재 어떤 자본규제레짐을 귀 국가의 은행/금융분야에 적용하는가?	바젤 I	1점
		바젤 II	2점
		부채성 비율	1점
		기타	1점
3.2	귀 국가는 자본규제의 최소요건으로서 어떤 리스크를 규제/감독하는가?	신용 리스크	1점
		시장 리스크	1점
		운영 리스크	1점
		기타	1점

출처: World Bank(2012)

- 4) 부채성 비율은 기업이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 5) 위험가중자산이란 대출금, 미수금, 가지급금, 유가증권, 예치금 등 자산유형별로 위험정도를 감안한 가중치를 평가하며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의 비율로 측정한다.
- 6) 부외거래란 금융기관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예컨대 예금 고객에게 입금 표시가 찍힌 정상적인 예금통장을 내주면서 금융기관의 원장에는 거래하는 않는 것이다. 부외거래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은 은행의 횡령이나 회계분식을 방지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 3.2는 각 국가가 자본적정성을 규제할 때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는지를 묻는 항목이다. 바젤 위원회는 신용/시장/운영 리스크와 기타 리스크를 가급적 체계적으로 고려하라고 회원국에 추천한다. 따라서 바젤 위원회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 각 리스크 마다 1점씩 부여하였다. 글로벌 금융레짐 참여도(GFR)은 각국이 문항 3.1과 3.2에서 받는 점수의 총합으로서 지수화하였다.

## 2. 독립변수

### 1) 은행 규제감독 기관의 조직[변수: SINGLE]

이 변수는, 은행을 규제감독하는 국가기구의 조직이 단일한가 아니면 복수의 기구가 담당하는지를 말한다. 본 연구는 국가가 단일한 규제감독기구를 통해 은행을 감독할 경우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글로벌 금융레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예측한다. 데이터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 혹은 별도의 은행감독기구가 독자적으로 은행부문을 관리할 경우 “1”, 복수의 감독기구일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기타의 경우, 각국 정부의 추가 설명을 연구자가 면밀히 고려하여 단일/복수 감독 여부를 코딩하였다.

[표 4] 단일/복수 규제감독조직의 코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점수 배정	
12-1	어떤 감독규제기관이 금융건전성을 위해 은행부문을 관리하는가?	a. 중앙은행	“예”= 1
		b. 독립된 단일 은행감독기구	“예”= 1
		c. 복수의 감독기구(중앙은행 포함)	“예”= 0
		d. 복수의 감독기구(중앙은행 제외)	“예”= 0
	기타	-	

출처: World Bank(2012)

### 2) 은행 규제감독기구의 독립적 권력[변수: TERMYR, FINSUPWR]

규제감독기구가 갖는 독립적 권력의 정도는 2개의 측면 즉, 정부로부터의 독립성[변수: TERMYR]과 규제감독의 대상인 은행자본에 대한 권한[변수: FINSUPWR]으로 나뉜다. 먼저 규제감독기구는 은행산업의 로비를 받은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고정된 장기간일수록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서베이 IV 설문문항(12-6-0, 12-6-1)에서, 고정임기제 아니거나 임기가 3년 이하일 경우 1점, 4~5년의 고정임기제 일 경우 2점, 6년 이상의 장기 고정제일 경우 3점을 배점하였다.

[표 5] 규제감독기구의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권력 코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점수 배정
12-9	감독관이 선의로 행사한 조치가 해당은행에 피해를 주었을 때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예(=0), 아니오(=1)*
12-10	감독기구는 자신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은행의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예(=0), 아니오(=1)*
10-3	모든 은행(그룹)은 연간 재무제표를 어떤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하는가?	개별 재무제표	예(=2)*, 아니오(=0)
		연결 재무제표	예(=1), 아니오(=0)
10-4	은행은 재무제표를 공개하기 전에 은행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하는가?		예(=1), 아니오(=0)
10-5	은행은 금융감독관에게 어떤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는가?	재무제표	예(=1), 아니오(=0)
		부외거래표	예(=1), 아니오(=0)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예(=1), 아니오(=0)
		자본적정성	예(=1), 아니오(=0)
		이해당사자와의 거래	예(=1), 아니오(=0)
		기타 필요 정보	예(=1), 아니오(=0)
		연결재무제표의 포괄성	예(=1), 아니오(=0)
10-5-1	감독관은 은행이 금융시장에 어떤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가?	재무제표	예(=1), 아니오(=0)
		부외거래표	예(=1), 아니오(=0)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예(=1), 아니오(=0)
		자본적정성	예(=1), 아니오(=0)
		이해당사자와의 거래	예(=1), 아니오(=0)
		기타 필요 정보	예(=1), 아니오(=0)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예(=1), 아니오(=0)
10-5-2	은행장은 잘못된 정보 보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가?		예(=1), 아니오(=0)
10-6	감독관은 은행이 다음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가?	규정 위반시 벌금 및 해결책 정보	예(=1), 아니오(=0)
		기타 정보	예(=1), 아니오(=0)
10-7	감독관은 은행에 외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가?		예(=1), 아니오(=0)

출처: World Bank(2012); \*: 본문 설명을 참조



한편 은행 규제감독기구가 은행자본의 운영 과정에 침투하여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능력과 권한을 측정해야 한다. 코딩 방법은 다음 [표 5]와 같다. 전반적인 코딩방식은, 은행이 보다 많은 금융거래 정보를 보고/공개하도록 규제감독기구가 강제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만, 몇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첫째 문항번호 12-9, 12-10의 경우, 감독관과 감독기구가 선의로 행한 조치에 대해 해당 은행이 영업손실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소하도록 허용되면 감독관은 실무현장에서 상당히 위축된다. 실제 은행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감독관의 현장 실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Barth 외 2006). 따라서 감독관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경우 1점을 배정하였다.

둘째 문항번호 10-3이다. 은행그룹이 발간하는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는, 그룹 소속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작성하는 개별기준(individual basis)과, 그룹 전체(주식, 보험, 선물 등 복수의 하위부문을 포괄)에 대해 작성하는 연결/통합 기준(consolidated basis)이 있다. 후자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우며 실제 전자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지 않는다(World Bank 2012). 따라서 개별재무제표 ‘만’ 작성하는 경우는 2점, 연결/통합재무제표 ‘만’ 작성하는 경우는 1점, 둘 다 작성하는 경우는 3점으로 코딩하였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규제감독기구의 조직과 권력 수준)가 종속변수(글로벌 금융레짐 참여도 정도)에 미치는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탐지하기 위해 기타 교란 요인을 통제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1)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권 행사/개입 여부[변수: CB]

바젤위원회는 주로 선진국 위주의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바젤레짐은 각국 중앙은행의 이익과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실제 ‘은행의 은행’인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을 전담하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표 2]에서 보듯이,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감독을 중앙은행이 아닌 별도의 감독기구가 단독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규제감독기구가 복수인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 단독이건, 별도 기구 단독이건 관계없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추출하기 위해 중앙은행 요인이 갖는 교란 효과를 통제해야 한다. 또한 이 변수는 학계 논쟁인 “시장 전체의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미시적, 정치적 영역인 금융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다(Goodhart 외 1995; Barth

외 2006; Chihak 외 2006). 세계은행 서베이 IV의 설문문항(12-1)에서 중앙은행의 개입 여부에 따라 “예”(표 4의 a, c)인 경우 1, “아니오”(표 4의 b, d)인 경우 0을 코딩하여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 2) 사법부의 개입 여부[변수: COURT]

법원은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조조정/청산이 불가피할 때 이해당사자(금융기관 직원이나 주주, 거래 업체 등)가 제소할 경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일국의 금융규제감독체제 운영에 중요한 행위자이다. 이해당사자들은 법원 제소를 통해 금융규제감독기구의 조치를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할 수 있으며, 반면에 금융규제감독기구는 은행산업의 대응을 미리 예측하여 규제감독의 수위와 범위를 사전에 조절하기도 한다(World Bank 2012). 예컨대 법원에 제소할 경우 금융규제감독 당국의 조치가 중단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덴마크, 영국 등이며, 반면에 법원 제소와 무관하게 금융당국의 조치가 추진되는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 기니아, 아이슬란드, 멕시코, 세네갈, 대만, 미국 등이다. 사법부의 개입 정도가 금융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흥미롭게도 정치경제학계에서 연구성과가 매우 부족하므로(Barth 외 2006) 이 통제변수는 중요하다. 사법부의 법적 권한 혹은 개입 여부는 다음 [표 6]과 같이 배정된 점수의 총합으로써 계산하였다.

[표 6] 사법부의 법적 권한 코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점수 배정	
11-6	다음과 같은 은행의 문제를 해결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	파산 선고	예(=1), 아니오(=0)
		주주의 권리 중지	예(=1), 아니오(=0)
		은행 고위 간부의 해임	예(=1), 아니오(=0)
		은행문제 청산방법 도입	예(=1), 아니오(=0)
		은행 위탁기관의 선정	예(=1), 아니오(=0)
11-7	은행의 주주들은 은행규제감독기구의 결정에 반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	예(=1), 아니오(=0)	

출처: World Bank(2012)

## 3) 은행의 자본적정성[변수: CAPRATIO]

바젤위원회는 은행자본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최소 8% 이상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

(부채+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데, 실제 각국 은행은 더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한다. 이 변수를 회귀분석에 넣어 통제하는 이유는, 일국의 금융산업이 건전하여 자본적정성이 높을 경우 국제금융레짐의 스탠더드인 바젤원칙 I이나 바젤원칙 II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포착, 통제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자본적정성이 낮은 은행부문을 가진 금융당국이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입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국내 금융부문을 개선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변수의 측정을 위해, 서베이 IV의 설문 문항(3-3-2-3)인 “2010년 은행부문의 실제 위험가중 자본비율(actual risk-based capital ratio)는 얼마인가?”에 대한 각국 응답치를 적용하였다.

#### 4) 은행자본의 영업 성적[변수: NPL]

일국의 은행부문이 새로운 국제금융기준을 채택/준수하는데는 ‘전환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은행의 영업실적과 자본 운용이 우수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부담을 느끼며, 반대의 경우 까다로운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영업성적은,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 보증액의 합인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이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써 측정할 수 있다. 이 변수는 각각 서베이 IV의 설문문항(13-13)에 대한 각국 금융당국의 응답치를 사용하였다.

#### 5) 정부의 은행자본에 대한 소유권/지배력[변수: GOVOWN]

은행자본의 소유 지배력이 가질 수 있는 교란 효과 역시 통제되어야 한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은행의 정부 소유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Lewis 1950; Myrdal 1968; Gerschenkron 1962). 세계은행 역시 같은 맥락에서, 민간은행자본의 지배력이 강하면 소수 엘리트계층에 신용이 집중되고 지나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World Bank 2001). 반대의 논리도 존재한다. 정부의 은행 소유권은 금융자원의 분배를 정치화하고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부문을 강화함으로써 금융부문 전체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Shleifer 외 1993; LaPorta 외 2002; Barth 외 2001). 이런 경우 취약한 국내금융자본이 막대한 전환의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글로벌금융의 스탠더드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은행자본의 정부 소유권 혹은 지배력은 서베이 IV의 설문 문항(13-7-1-3)에 따라, 각국 은행부문의 전체 자산 중에 정부가 지배/통제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 6) 해외자본의 소유권[변수: FOREIGNOWN]과 외환시장 노출[변수: FX]

새로운 국제금융의 기준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 집단에 이질적인 효과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의 은행산업은 회계, 자본적정성, 정보투명성, 운영의 노하우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다(Walter 2008). 또한 자본시장보다 은행을 통해 자본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 개발도상국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 공급자인 은행이 새로운 국제규범 하에서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하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은행산업과 기업부문은 국제금융기준에 반대하는 세력(non-compliance sector)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는 외국자본/투자자가 국내금융시장에 대거 진입할 경우 이들에게 국제기준의 준수 비용(compliance cost)은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레짐 합류(harmonization choice)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통해 국내 은행산업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Gill 1995; Levine 1996; Hansmann 외 2000; Simmons 2001; Soederberg 2003). 또한 국제시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국내 은행자본의 경우도 준수 비용이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레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생긴다(Jones 2017). 이러한 외부 금융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서베이 IV의 설문 문항(13.9)에 따라, 각국 은행부문의 총자산에서 외국계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한편 은행은 자기 자본 이외에 예금/투자자로부터 보다 많은 자본을 동원하여 자산을 늘임으로써 자신의 금융지배력을 증가한다. 글로벌 금융시대에 국내은행산업이 해외로부터 부채(즉, 예금과 투자유치금)을 동원하려면 무엇보다 해외예금/투자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이 국제금융의 스탠더드를 준수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바젤 레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외환으로 표시된 예금/투자금을 은행이 많이 보유할수록 은행은 국제금융레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외환시장의 노출 정도는, 서베이 IV의 설문 문항(13.7)에 따라 2010년 각국 은행의 부채 중 외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 7) 자본 집중도[변수: CONCENT]

일국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원이 소수의 대자본에 집중될 경우 이들 강력한 대자본의 선택은 일국 금융시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금융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집중도가 글로벌 금융레짐 참여 및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서베이 IV의 설문문항(13-6)의 “상위 5대 은행은 은행부문 총자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응답치를 사용하였다.

### Ⅲ. 분석 결과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7, 8]과 같다. 모델 1~10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의 F값과 유의확률로 보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각 모델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하면 측정값에 오류가 발생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을 조사해보면 모두 0.3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1. 독립 변수

변수 SINGLE은 모든 모델에서 0.01 이하의 수준에서 양(+)의 회귀계수를 가진다. 즉, 은행부문의 규제감독기구가 하나의 조직으로 단일화된 경우 국제금융레짐의 스탠더드(바젤 I, II 기준,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적용)를 더 꼼꼼히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

[표 7] 은행자본의 글로벌금융레짐 참여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SINGLE	1,554*** (0.451)	1,765*** (0.430)	1,624*** (0.430)	1,531*** (0.443)	1,736*** (0.457)
TERMYR		-0.111 (0.141)	-0.072 (0.140)	-0.067 (0.141)	-0.109 (0.147)
FINSUPWR		0,236*** (0,048)	0,252*** (0,048)	0,251*** (0,048)	0,247*** (0,050)
CB			-0.660** (0.324)	-0.721** (0.336)	-0.615* (0.337)
COURT				0,102 (0,110)	0,107 (0,116)
CAPRATIO					-1,755 (2,409)
NPL					
GOVOWN					
FOREIGNOWN					
FX					
CONCENT					
R2	0,08	0,229	0,254	0,258	0,281
F	11,881***	12,583***	10,709***	8,631***	7,284***
N	138	131	131	130	119

\*\*\*( $p < 0.01$ ); \*\*( $p < 0.05$ ); \*( $p < 0.1$ ). 괄호 안은 표준오차

흥미롭게도 금융규제감독 기구의 기관장 임기(TERMYR)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이 긴 고정제 임기를 가진 기관장이 정부나 은행의 로비 압력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국제금융거래의 스탠더드를 적용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정부나 금융기관에 압력에 종속적인 기관장도 고정제이거나 임기가 길 수 있다. 즉, 정부는 자신의 요구와 지시에 종속적인 기관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관장의 직위를 장기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권력(FINSUP) 변수의 경우 모델 2~10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회귀계수를 가진다. 즉, 규제감독 기구가 은행(그룹)에게 다양한 금융정보(재무제표, 거래 정보,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등)를 산출/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권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제금융레짐의 스탠더드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표 8] 은행자본의 글로벌금융레짐 참여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모델 6	모델 7	모델 8	모델 9	모델 10
SINGLE	1.816*** (0.461)	1.681*** (0.461)	1.875*** (0.458)	2.329*** (0.490)	2.306*** (0.544)
TERMYR	-0.034 (0.145)	-0.067 (0.145)	-0.051 (0.143)	0.127 (0.149)	0.143 (0.157)
FINSUPWR	0.237*** (0.050)	0.268*** (0.051)	0.266*** (0.050)	0.256*** (0.050)	0.259*** (0.052)
CB	-0.376 (0.340)	-0.509 (0.347)	-0.538 (0.343)	-0.525 (0.349)	-0.527 (0.354)
COURT	0.063 (0.123)	0.101 (0.124)	0.136 (0.123)	0.075 (0.122)	0.076 (0.123)
CAPRATIO	-3.231 (2.477)	-2.761 (2.449)	-1.558 (2.528)	-0.772 (2.501)	-0.742 (2.542)
NPL	-2.200** (0.944)	-2.297** (0.931)	-1.992** (0.910)	-1.994** (0.867)	-1.977** (0.886)
GOVOWN		0.366 (0.836)	-0.185 (0.918)	0.023 (0.913)	0.075 (0.933)
FOREIGNOWN			-0.853 (0.527)	-0.923* (0.522)	-0.883 (0.532)
FX				0.071 (0.655)	0.012 (0.670)
CONCENT					0.179 (0.810)
R2	0.339	0.368	0.350	0.485	0.484
F	7.402***	7.123***	7.173***	7.618***	6.746***
N	109	107	104	92	91

\*\*\*( $p < 0.01$ ); \*\*( $p < 0.05$ ); \*( $p < 0.1$ ). 괄호 안은 표준오차

## 2. 통제변수

중앙은행의 금융규제감독권(CB)은 모델 3~5와 달리 모델 6~10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일관되지 않다. 즉 중앙은행이 국내은행 규제감독체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제금융의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시장 전체의 거시경제를 관리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인 통화량 조절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미시적이고 정치적 영역인 금융규제 및 감독 기능까지 갖는 것이 국제금융레짐의 참여나 스탠더드의 준수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법원 변수(COURT)는 모델 전체(4~10)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회귀계수가 없다. 즉, 법원이 일국 금융부문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사법적 개입을 하는 정도는 글로벌 금융레짐의 스탠더드 준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바젤 I과 바젤 II는 주로 은행자본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금융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에 대한 사후적 개입을 의미하는 사법부의 법적 권한 강화나 개입은 바젤 스탠더드와 사실상 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자본의 적정성(CAPRATIO)은 모델 5~10에서 일관되게 음(-)의 부호를 갖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 즉,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바젤 스탠더드를 더 잘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말타, 지브랄터, 바나투, 케이맨 제도, 통가,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쿠웨이트는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20퍼센트를 넘고 바젤 II 기준을 준수하지만, 반면에 방글라데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호주, 스페인,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는 자기자본 비율이 12% 이하의 낮은 그룹이면서도 바젤 II 기준을 준수한다. 즉 자기자본비율이 높다고 해서 선진적인 글로벌 금융레짐에 참여할 유인은 없다. 반면에 은행자본의 영업성적을 측정했던 변수(NPL)는 모델 6~10에서 일관되게 의미있는 음(-)의 회귀계수를 가진다. 금융자본의 운용이 우수하여 부실한 대출 및 채권 비율이 낮은 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보다 더 잘 준수하며 국제금융레짐의 참여에 보다 적극적이다.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가정했던 것과 달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은행 지배력(GOVOWN)의 경우 은행 총자산에서 정부의 소유 비율이 낮은 그룹인 스페인, 페루,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홍콩은 국제금융레짐의 스탠더드를 잘 준수한다. 정부 소유분이 낮은 동일 그룹에서도 나이지리아, 벨리체, 피지, 온두라스, 레소토, 우간다, 파라과이는 바젤 원칙 준수에 소극적이다.

해외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력(FOREIGNOWN)이 갖는 효과도 미미하다. 외국자본/투자자가 국내금융시장에 대거 진입한다고 해서 국제금융레짐 합류(harmonization choice)를 해당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예컨대 해외자본이 국내 은행자본의 80 퍼센트 이상을 지배하는 국가군에서, 불가리아, 헝가리, 말타, 통가, 몬테네그

로,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는 바젤 원칙을 잘 준수한다. 그러나 같은 국가군에서 스와질랜드, 보스니아, 엘살바도르, 레소토, 피지, 벨리체는 바젤 원칙에 소극적이다. 해외자본의 지배력이 높으면서도 바젤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계 자본은 국내시장에 진출할 때 ‘미리’ 시장 및 금융업계의 관행을 조사한다. 해당 국가의 현지 기준에 따라 영업하더라도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출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레짐 기준으로의 전환비용이 적은 국제자본이라도 해당 국가에 이미 현지화(localization)되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다.

통제효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로써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외환시장 노출의 정도(FX)와 은행자본의 집중도(CONCENT) 역시 그 인과적 효과가 미미하다. 외환으로 표시된 예금/투자금을 은행이 많이 보유하여 국제금융시장에 노출된다고 해서 바젤 레짐을 더 잘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은행 부채 대비 외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국가군에서,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레소토, 엘살바도르, 나이지리아, 벨리체는 바젤 원칙에 소극적이다. 반면에 같은 국가군 내에서도 나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몬테네그로는 바젤 레짐에 적극 동조한다. 한편 상위 5대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이 80% 이상인 국가 중에, 레소토, 벨리체, 피지, 부탄, 몰디브, 타지크스탄, 에티오피아는 바젤 원칙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동일 국가군에서도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 수리남, 페루, 프랑스, 네덜란드는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 체제를 가진다.

## IV. 맺는 말

본 연구는 전 세계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은행의 서베이 IV 데이터에 기반하여, 규제감독기구의 조직적 특성이 바젤원칙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레짐의 참여 혹은 그 스탠더드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베버리언적인 함의를 가진다. 일국의 은행부문을 규제감독하는 국가기구가 단일한 조직이고 규제권력이 강할수록 선진적인 바젤원칙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일조직은, 여러 개의 국가기구가 은행자본을 규제할 경우 바젤원칙 채택 및 준수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조정 비용과 거래비용,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감독당국이 은행자본에게 외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받게 하고 다양한 내부 금융정보 공개를 강제할 권한이 많거나 감독관의 법적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바젤원칙의 준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금융규제당국 기관장의 법적 임기 조항 자체는 바젤원칙의 준수와 관계가 없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로비와 압력에



종속적인 기관장을 정부가 선호하여 장기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다수의 정책행위자가 존재할 경우에도 단일한 통합기구가 갖는 조직적 장점을 발휘할 수는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n$ 개의 행위자 수는 산술적으로 증가하지만 정책비용은  $n(n-1)/2$ 개로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그 가정(“복수의 정책행위자는 서로 독립적이고 동등한 권력을 가진다”)를 완화하면 현실적인 방안이 나온다. 예컨대 1) 이들이 유사한 경제이데올로기나 정책선호를 가져서 인식론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일 경우; 2) 특정한 행위자가 지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종의 위계질서를 창출할 때; 3)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이들 간의 결속력과 동질성이 증가할 때; 4) 별도의 상위기구를 조직하여 행위자들이 동시에 일괄 협상을 진행할 때이다(변영하 2011). 이러한 조건은 복수의 금융규제체제하에서도 가질 수 있는 단일체제의 기능적 등가물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은행의 서베이 IV 데이터는 2011년에 고정된 교차국가분석(cross-national analysis)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정보가 수집/축적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인은 결과에 시간상 앞선다.’는 인과성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차후엔 서베이 I(1999년 발간), II(2003년 발간), III(2007년 발간), IV(2012년 발간) 시리즈를 통합 재구성하여 시계열교차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바젤 원칙과 서베이 IV 데이터는 각국의 은행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비은행 금융부문(예컨대 주식, 선물, 채권, 보험)까지 포괄하는 금융시장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일한 은행 규제감독기구가 바젤레짐 참여와 준수를 유도하는 인과적 경향이 있다고 해서 이 논리가 비은행 금융부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변영학. 2011. 금융감독권력의 조직화와 그 효과: 143개국 금융체제의 통계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1(3), 77-105.
- Aviram, Amitai. 2003. Regulation by Network. *BYU Law Review*. 2003(4). 1179-1235. 출처: <https://goo.gl/GtxzGc> ((검색일: 2017. 12. 2).
- Barth, James R., Daniel E. Nolle, Triphon Phumiwasana, Glenn Yago. 2003. A Cross-Country Analysis of the Bank Supervisory Framework and Bank Performance.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12(2), 67-120.
- Barth, James R., Gerard Caprio, and Ross Levine. 2001. Banking Systems Around the Globe: Do Regulations and Ownership Affect Performance and Stability? Frederic S. Mishkin, ed., *Prudential Supervision: What Works and What Does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1-96.
- Barth, James R., Gerard Caprio, and Ross Levine. 2006. *Rethinking Bank Regulation: Till Angels Gover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ghton, James M. and Alex Mourmouas. 2002. Is Policy Ownership and Operational Concept? IMF Working Paper. WP/02/72. 출처: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p/2002/wp0272.pdf> (검색일: 2017. 11. 3).
- Briault, C. 1999. The Rationale for a Single National Financial Services Regulator.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ccasional Paper*. Series 2. 출처: <https://goo.gl/jEigJS> (검색일: 2017. 10.4).
- Busika, Themba, Muhammad Hoque. 2017. An Investigation into the Best Approach to the Implementation of Base II in Swaziland.”*Banks and Bank Systems*. 12(4). 131-143.
- Cihak, Martin and Richard Podpiera. 2006. Is One Watchdog Better Than Three?: International Experience with Integrated Financial Sector Supervision. IMF Working Paper WP/06/57. 출처: <https://goo.gl/3NPxVd> (검색일: 2017.

10. 27.).

- De Nicolo, Gianni, Philip F. Bartholomew, Jahanara Zaman, and M.G.Zephirin. 2003. Bank Consolid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Conglomeration: Trends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Risk. IMF Working Paper WP/03/158. 출처: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p/2003/wp03158.pdf> (검색일: 2017. 11. 20.).
- Ermolova, Maria D., Henry I. Penikas. 2017. Basel Regulation: A Dangerous Obsession. Model Assisted Statistics and Applications. 12(1). 63-88.
- Finnemore, Martha, and Kathryn Sikkink. 1998.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887-917.
- Gerschenkron, Alexander,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 Cambridge: Belknap Press, 1962.
- Gill, Stephen. 1995. Globalization, Market Civiliz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Millennium. 24(3). 399-423.
- Goodhart, Charles, Philipp Hartmann, David Llewellyn, Liliana Rojas-Suarez, Steven Weisbrod. 1998. Financial Regulation: Why, How and Where Now? Routledge.
- Goodhart, Charles, Dirk Schoenmaker. 1995. Should the Functions of Monetary Policy and Banking Supervision Be Separated? Oxford Economic Papers. 47(4). 539-560.
- Haas, Peter M. 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1-35.
- Hansmann, Henry, and Reinier Kraakman. 2000. The End of History for Corporate Law. Harvard Law School. Discussion Paper 280. 출처:  
<https://goo.gl/rwshF3> (검색일: 2017. 11. 26.).
- Havrylyshyn, Oleh, and John Odling-Smee. 2000. Political Economy of Stalled Reforms. Finance and Development 37(3). 7-10.
- Ikenberry, G. John. 1992. A World Economy Restored: Expert Consensus and the Aglo-American Postwar Settl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289-321.

- Ivanova, Anna, Wolfgang Mayer, and Alex Mourmouras, and George Anayiotos, 2003. What Determines the Implementation of IMF-Supported Programs? IMF Working Paper, WP/03/8. 출처: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p/2003/wp0308.pdf> (검색일: 2017. 9. 2.).
- Jones, Emily, Alexander O. Zeitz, 2017. The Limits of Globalizing Basel Banking Standards.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3(1). 89-124.
- Laeven, Luc and Fabian Valencia, 2012. Systemic Banking Crises Database: An Update. IMF Working Paper, WP/12/163. 출처: <https://goo.gl/tgcVGS> (검색일: 2017. 11. 18.).
-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 Shleifer, 2002. Government Ownership of Commercial Banks. *The Journal of Finances* 57(1). 265-301.
- Levine, Ross, 1996. Foreign Banks,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Claude E. Barfield e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Harmonization versus Competition*. AEI Press.
- Lewis, Arthur, 1950. *The Principles of Economic Planning*, London: G. Allen & Unwin.
- Mayer, Wolfgang, and Alex Mourmouras, 2002. Vested Interests in a Positive Theory of IFI Conditionality. IMF Working Paper, WP/02/73. 출처: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p/2002/wp0273.pdf> (검색일: 2017. 11. 19.).
- Myrdal, Gunnar. *Asian Drama*, Pantheon, 1968.
- Risse, Thomas, Stephen C. Ropp, and Kathryn Sikkink, eds, 1999.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ggie, John G. 1998.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Neo-Utilitaria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vist Challe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855-885.

- Simmons, Beth, 2001.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Harmonization: The Case of Capital Market Regul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3). 589-620.
- Shleifer, Andrei, and R. Vishny, 1993. Corrup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3). 599-617.
- Soederberg, Susanne. 2003. The Promotion of ‘Anglo-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in the South: Who Benefit from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 *Third World Quarterly* 24(1). 7-27.
- Walter, Andrew. 2008. *Governing Finance: East Asia’s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Cornell University Press.
- White, Lawrence J. 1996. Competition Versus Harmonization: An Overview of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inance. Claude E. Barfield e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Harmonization versus Competition*. AEI Press. 5-48.
- World Bank. 2001. *Finance for Growth: Policy Choices in a Volatile World*.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12.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Survey (Survey IV)*. <https://goo.gl/occ3GC> (검색일: 2017. 7. 24.).

● 투고일: 2018.02.09. ● 심사일: 2018.02.11. ● 게재확정일: 2018.02.18.

| Abstract |

##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Financial Regime and Domestic Supervisory Systems**

Byun Younghark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study explores effects of organizational features of domestic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on compliance on Basel Principles, a standard global financial regime, based on the World Bank Survey IV database of 142 economies. The results show with some Weberian implications that an integrated single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agency with greater power tends to comply with Basel Principles. Unitary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can reduce costs of policy coordination among interest parti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 regulation agency tend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Basel regime if it has legal authority to require commercial banks to have external credit ratings and disclose in public more detailed transaction information.

〈Key words〉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supervision, World Bank, International regime, Basel Principles